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나7591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나7591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2 선고 2020가단513396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배용선

변론종결 2021. 8. 11.

판결선고 2021. 9. 1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2. 선고 2020가단513396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A과 피고 사이에 2019. 6.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위 A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19. 6. 14.
접수 제2119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공동담보의 감소 여부

(1) 피고의 주장

1심 공동피고 A은 피고로부터 2015. 9. 7. 1억 원을, 2017. 4. 11. 2억 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각 차용하였다. A은 2019. 4. 23. 피고에게 추가로 1억 원을 차용해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가 A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였고 결국 A이 2019. 6.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은 새로운 차용금 채무 1억 원(담보로 근저당권 1억 2,000만 원 정도 책정)을 주로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나머지는 위 A의 피고에 대한 기존의 차용금채무 3억 원 중 일부인 7,000만 원 정도에 대한 담보임)이고, A은 위 1억 원으로 거래처인 E회사(F)에게 석유대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거래처인 (주)G에게 석유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1,500만 원은 'H'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H'라는 사업체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것인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374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A에게 2015. 9. 7. 1억원을 변제기는 채권자가 변제요구한 시점에서 90일 이내,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2017. 4. 11. 2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A으로부터 위 기존 대여금을 포함한 3억 원에 대하여 변제기는 채권자가 변제요구한 시점에서 90일 이내, 이자 연 24%로 정한 차용증을 교부받은 사실, 다시 2019. 4. 23. 1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A으로부터 위 기존 대여금을 포함한 4억 원에 대하여 변제기는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한 시점에서 90일 이내, 이자 연 24%로 정한 차용증을 재차 교부받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원인이 된 대여금(피고는 주로 위 2019. 4. 23.자 대여금 1억 원에 대한 담보라고 주장)에 대하여 신규 사업자금을 부득이하게 융통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8호증(A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A의 위 2019. 4. 23.자 1억 원의 자금유통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실제로 A이 위 1억 원을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선의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A과 2013년부터 I동의 동네주민으로 당시 재개발과 관련하여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온 사실은 있으나, A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이나 사업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다. A이 기존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성실히 납부해 왔으며 A이 운영한 'H'의 매출세액 또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증대되어 왔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의 원인이 된 위 2019. 4. 23.자 대여 당시 A이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금원 또한 'H'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하여 A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으로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을 제8호증(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A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반복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수경, 판사 김우현, 판사 허일승

별지